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65 발의연월일: 2025. 1. 13.

발 의 자:김용만・이인영・강준현

김영배 · 박상혁 · 이훈기

이학영 • 박지혜 • 한민수

노종면 • 용혜인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. 원칙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괄하는 비재산적 손해까지 포함됨.

그런데 현행법의 문언은 생명·신체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의 가족 등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 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비판이 제기됨.

이에 해당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재산적 피해 또는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취지임(안 제3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 중 "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"을 "피해자 또는"으로, "배우자,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"을 "배우자에게는"으로, "피해자의 사회적 지위, 과실(過失)의 정도, 생계 상태, 손해배상액 등을"을 "다음 각 호의 사정을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피해자의 연령, 직업, 사회적 지위, 과실(過失)의 정도, 생계 상태 및 고통의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
- 2. 가해자의 고의·과실의 정도, 가해 행위의 동기와 원인,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
- 3.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 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정신적 손

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배상기준) ① ~ ④ (생	제3조(배상기준) ① ~ ④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	⑤ <u>피해자 또는</u>		
은 피해자의 직계존속(直系奪			
屬) • 직계비속(直系卑屬) 및 <u>배</u>	<u>베</u>		
우자,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	<u> 우자에게는</u>		
<u>를 입은 피해자에게는</u> 대통령			
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<u>피</u>	<u></u> 다		
해자의 사회적 지위, 과실(過	<u>음 각 호의 사정을</u>		
失)의 정도, 생계 상태, 손해배			
<u>상액 등을</u> 고려하여 그 정신적			
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			
여야 한다.	<u>.</u>		
<u><신 설></u>	1. 피해자의 연령, 직업, 사회적		
	지위, 과실(過失)의 정도, 생		
	계 상태 및 고통의 정도 등		
	<u>피해자 측의 사정</u>		
<u><신 설></u>	2. 가해자의 고의・과실의 정		
	도, 가해 행위의 동기와 원인,		
	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		
	등 가해자 측의 사정		
<u><신 설></u>	3.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		
	손해배상이 있는 경우 그 손		

 6
 • ⑦ (생 략)

 適배상액

 ⑥ • ⑦ (현행과 같음)